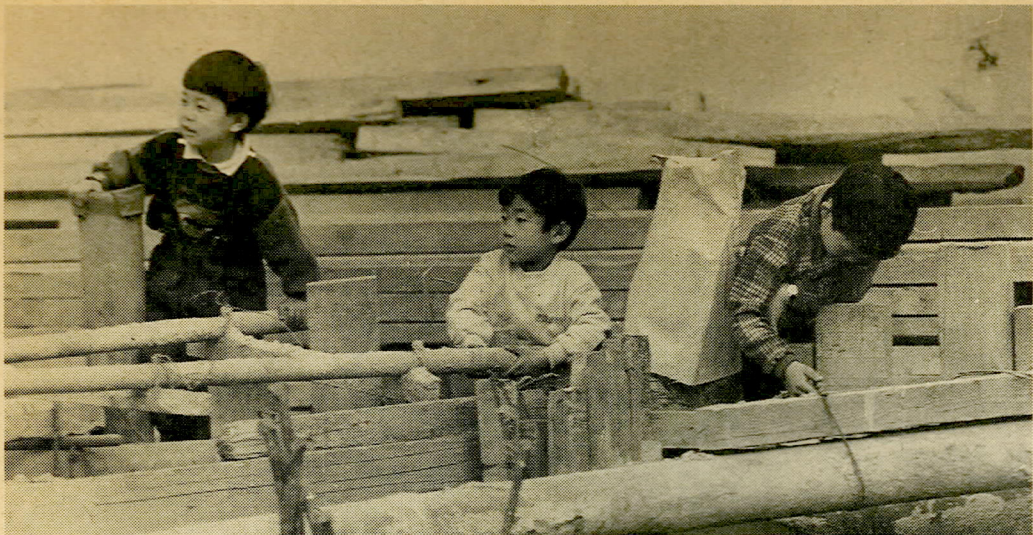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폭넓은 의견 수렴 통한 '대폭 수정' 따라야 보육위원회 기능, 직장탁아 설치 기준 놓고 이견 커



보사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영유아보호교육법의 시행령을 놓고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큰 이견을 보이며 '수정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시행령 제3조 보육위원회의 기능 규정과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제27조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부분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육위원회의 역할을 중앙보육위와 시도 및 시·군·지방 보육위로 나눠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공통으로 심의하되 △중앙보육위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을, 시·군·지방보육위는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보육비 수납,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 탁아문

제대책위원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탁아전문가들은 "이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 가 되지 못해 관의 자문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보육위원회의 기능에는 △보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평균보육비용의 결정 △보육시설의 설립, 운영위탁지의 선정, 비용보조 대상 보육시설 및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같은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의결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시행령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부분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문제. 시행령은 그 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1천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못박아 놓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실태는 1천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1백~3백인 정도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기혼여성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처벌규정도 없이 "1천인 이상의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직장탁아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여성민우회, 전교조 여성국,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14개 단체와 지역탁아소연합회는 상시 3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단 교육·금융·의료기관 등 사업장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외조항을 뒤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용의 보조에서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뿐만 아니라 '시설비 지원'도 내놓고 있어, 시설비 지원을 제외한 시행령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보사부 가정복지심의실에서는 "각계의 입장을 대변할 관계자들을 초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곧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외에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이견의 폭도 커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미지수인 상태. 시행규칙에서도 △보육비용의 지원 △보육 시설의 설치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가 시행규칙으로 내놓은 보육비용의 지원규정은 ①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 2명에 한해 평균 보육비용의 전액을 지원 ② 최저생계비 미달 가정의 자녀 1명에 한해 평균보육비용의 70%를 ③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00~150%인 가정한 자녀에 한해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사부의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1일 간식비 5백원 정도의 부모부담을 제외하면 여성계가 제시한 생보 및 의료부조자 가족의 자녀에 대한 전액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 보사부에서

는 전액면제나 부분면제 대상의 기준으로 빈곤선을 평균가구소비지출의 50% 이하(서울전가구 평균 91만3천1백93원으로 볼 때 45만원 이하의 소득가구)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의 수나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또 보육아동의 상한선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계는 △명수제한을 두되 △30명 미만의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민간 보육시설로 설립케 하고 시설기준의 대폭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보육비용의 지원과 보육시설 설치 기준 문제 역시 보육위의 기능이나 직장탁아 설치 조항과 함께 보육정책의 기본성격을 규정짓는 사항이어서 수정안 마련을 놓고 보사부와 여성계간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해숙 기자>

〈도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의견

구분	지 역 사 회 탁 아 소 연 합 회	시 행 령
보육위원회 기능	① 보육에 관한 기본정책 결정 ②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위탁지의 선정, 국공립 시설 운영사항 감시 ③ 비용보조대상 보육시설 및 지원대상 아동선정 ④ 평균보육비용 결정	중앙보육위는 ①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사항 ② 보육사업 조사·연구사항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시·도 지방보육위는 ①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르는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시·군 지방보육위는 ①, ② 보육시설 설치·운영 사항 ③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사항 ④ 비용수납 사항을 심의
직장보육시설설치	• 상시 3백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설치하되 교육·금융·의료기관 및 기타 직장탁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장에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시 설치	• 상시 여성근로자 1천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국공립시설 운영비를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②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 ③ 민간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자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비용보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	비용부담은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는 예산범위 내 부담하되 부담비율도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른다 비용보조는 ① 보육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예산범위내 그 비용의 일부를 ② 저소득층자녀를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는 시설은 매년 그 운영비의 100분의 80 이상 등을 보조